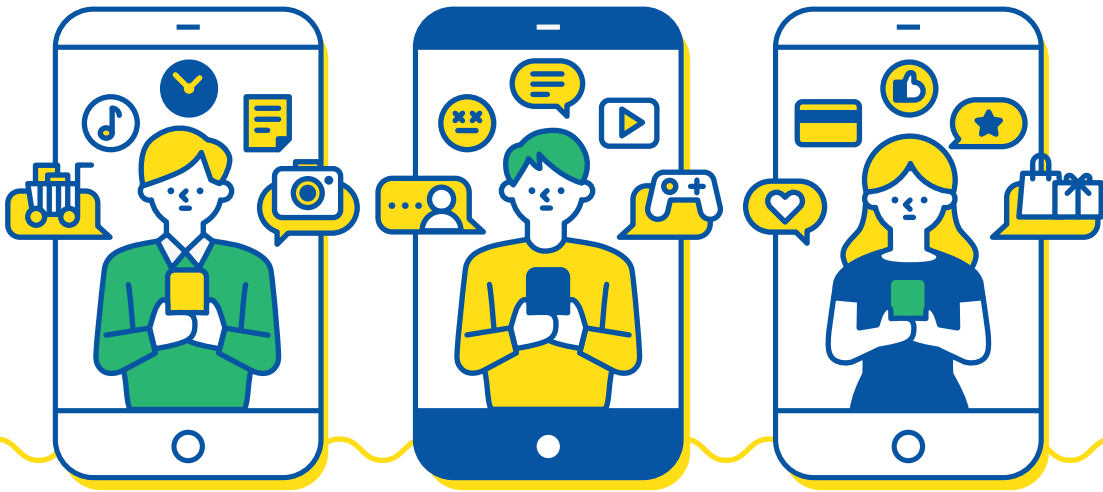


스마트폰 과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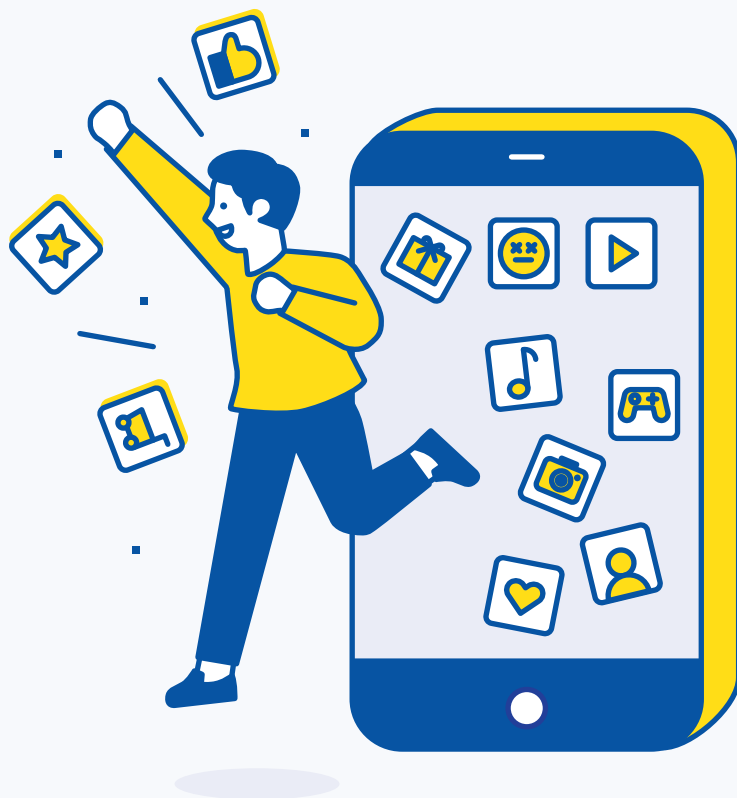
예방교육

안내 매뉴얼



목차

1	주요 사항 안내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일정• 관련 시스템	
<hr/>		
2	개요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연혁• 법적 주요내용	
<hr/>		
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현황조사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결과 수정·추가제출• 관리자 특별교육•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우수기관 공모	
<hr/>		
4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Q&A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교육 대상 관련• 예방교육 방법 관련	
<hr/>		



1.

주요사항 안내

① 연간 주요일정

구분	기관별 실시 결과 제출	실시 결과 수정·추가 제출	실시 결과 점검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	우수기관 공모
일정	2~4월	5월	6월	7~8월	9~12월

일정	주요내용
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어린이집, 대학교, 공공기관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출 - 초·중·고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 정보공시 제출 내용으로 같음 ※ 점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유치원 정보공시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초·중·고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현황 →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결과 수정 및 추가제출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에서 제출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점검
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결과 미제출 또는 이수기준 미충족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
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별도 공모 접수 및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위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② 관련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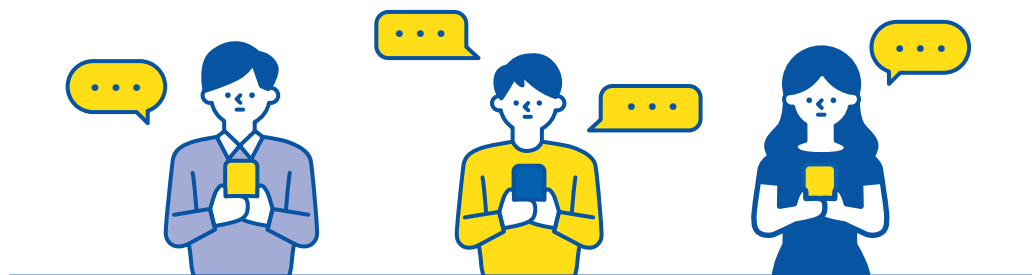
구분	주요 기능	URL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 제출·수정·확인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 예방교육 신청 (레몬교실, WOW멘토링 등) 	www.iapc.or.kr

2.

개요

목적

영·유아, 청소년, 성인 등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연혁

2013년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 유치원, 초·중·고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대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의무 규정

2018년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 명시
-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대상기관 확대(어린이집)
- 초·중·고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의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이수기준 강화(연 1회 → 반기별 1회)
-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 실시

2020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용어 변경

법적 주요내용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연 1회 이상
-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연 1회 이상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반기별 1회 이상
-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연 1회 이상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대상

대상기관	교육대상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
유치원	소속 유아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소속 학생
대학교	소속 학생
공공기관	소속 직원

예방교육 내용

-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 및 사례
-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방법
-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예방교육 방법

- 1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 2 내부교원·직원 등에 의한 교육
- 3 온라인 교육
- 4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교육 대상기관이 인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예방교육 이수기준

대상기관	교육횟수	이수기준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이수율 70% 이상
유치원	연 1회 이상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반기별 1회 이상	
대학교	연 1회 이상	이수율 50% 이상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이수율 70% 이상

※ 이수율(%) = 교육참여인원 / 교육대상인원 × 100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기관

-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점검한 결과 기관별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

- 1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 2 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 : 해당 유치원의 원감
- 3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 : 해당 학교의 교감 또는 교무부장
- 4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 :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
- 5 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 : 해당 공공기관 소속 인사 또는 교육 관련 부서의 장

관리자 특별교육 주요내용

-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
-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대상기관 및 교육대상 기관 관리자의 역할
-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예방교육 대상기관 관리자 역할

-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운영
-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 3 그 밖에 현장점검 대응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3.

실시현황 조사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현황조사
실시 결과 제출·점검

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2~4월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제출

- 대상기관 : 어린이집, 대학교, 공공기관
- 제출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
- 교육 여부, 교육대상인원 및 교육참여인원 등을 입력하고 증빙자료 첨부

- 교육대상인원** : 매년 연말(12월 31일) 기준, 기관 소속 인원을 교육대상인원으로 기재
- 교육참여인원** : 여러 번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 합산 인원 기재
- 증빙자료** : 반드시 ①교육대상인원, ②교육참여인원, ③교육기간, ④내부결재 여부 (서명, 인감 등)가 포함된 자료 제출

정보공시 제출

- 대상기관 : 유치원, 초·중·고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 제출 방법
 - 유치원** : 정보공시 ▶ 안전교육 계획 및 안전교육 현황 ▶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 초·중·고교** : 정보공시 ▶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 ※ 유치원알리미, 학교알리미에서 제출 내용 확인 가능

[참고] 예방교육 이수기준

구분	대상	횟수	이수기준	교육방법
어린이집	영유아	연 1회 이상	이수율 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 내부교원 직원 등에 의한 교육 • 온라인 교육 •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교육
유치원	유아	연 1회 이상		
초·중·고교 (특수, 각종학교 포함)	학생	반기별 1회 이상		
대학교	학생	연 1회 이상	이수율 50% 이상	
공공기관	직원	연 1회 이상	이수율 70% 이상	

- ※ 해당연도의 교육 이수율(%) = 교육참여인원 / 교육대상인원 x 100
- ※ 만 3세 미만 영아는 직접 교육 외 학부모 대상 가이드라인 안내 등도 교육으로 인정

②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결과 수정·추가제출 5월

- (어린이집, 대학교,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시 입력했던 기관·담당자 정보*로 제출 내용 확인·수정
※ 제출했던 기관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해야만 내용 확인·수정 가능
- (유치원, 초·중·고교) 정보공시 수정 절차에 따라 제출 내용 수정
※ 6월 이후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한 내용은 불인정

③ 관리자 특별교육 7~8월

-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결과 미제출·허위 제출, 이수 기준 미충족 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 관리자 특별교육 외 별도 불이익 없음

[참고] 교육대상기관의 관리자

구분	대상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원장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해당 학교의 교감 또는 교무부장
대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 소속 인사 또는 교육 관련 부서장

④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우수기관 공모 9~12월

- 우수기관에 지원한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시상
※ 공모 개요 등 세부 내용은 해당 기관에 개별 안내 예정



4.

예방교육 Q&A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Q&A

1.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대상 관련

Q. 예방교육의 대상은 누구이며,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예방교육 대상기관과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구분	대상	횟수	이수기준	교육방법
어린이집	영유아	연 1회 이상	이수율 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 내부직원 직원 등에 의한 교육 • 온라인 교육 •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교육
유치원	유아	연 1회 이상		
초·중·고교 (특수, 각종학교 포함)	학생	반기별 1회 이상		
대학교	학생	연 1회 이상	이수율 50% 이상	
공공기관	직원	연 1회 이상	이수율 70% 이상	

※ 해당연도의 교육 이수율(%) = 교육참여인원 / 교육대상인원 x 100

※ 만 3세 미만 영아는 직접 교육 외 학부모 대상 가이드라인 안내 등도 교육으로 인정

Q. 기관에서 교육대상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교육대상인원은 매년 연말(12월 31일), 기관 소속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방법 관련

Q.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관련 자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A. 다음 교육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는 제한 없이 예방교육에 활용 가능하며,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사례, 예방·시간관리 방법,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방법 등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로그인 후 콘텐츠 무료 다운로드 가능
- 기관 특성에 따라 전문강사 또는 내부교원·직원에 의한 교육, 온라인 교육 등 자율적으로 예방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등 스마트쉼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1599-0075)를 통해 신청

Q. 영아 전담 어린이집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영아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학부모 대상 안내자료, 가이드라인 배부 등도 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Q. 교육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A. 증빙자료는 교육 이수증(수료증), 교육 결과보고 등으로, 반드시 교육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관련 정보

- ① 교육대상인원, ②교육참여인원, ③교육기간, ④내부결재 여부(서명, 인감 등)
- 파일 규격 : PDF 또는 이미지(JPG, PNG 등) 파일(1MB 이하)
- ※ 교육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매뉴얼

상담/예방교육문의 : **1599-0075**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 www.iapc.or.kr

디지털 역기능 대응 통합안내 시스템 : www.gooddigital.or.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41068)